

감사보고서

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,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규정에 의하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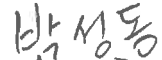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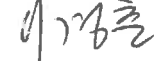
2023년 5월 17일

학교법인 가천학원

감사

박성동 

감사

이경춘 

피감사자 (임회인)

직위 산학협력단 팀장

성명 박현신 

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2회계연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<p><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,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의거, 2022회계연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바,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및 주요업무는 별도의 지적사항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다.></p> <p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</p>	

피감사기관장

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송윤재

직인 (사인)

